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공사(2단계)[장기1차]]

- 점검일시 : 2020.06.24 (수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정진혁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신설 데크B 서측 상부 데크플레이트 완료 구간 양단의 추락 단부는 현장에서는 내측에 안전로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단부를 안전난간으로 폐합시키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이므로 조치 요망
 - 신설 데크B 서측에 설치된 워킹타워는 작업이 없는 경우 상부가 매우 위험한 추락부이므로 관계자 외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조치 요망
 - 신설 데크B 서측 양단에 설치된 가설벤트는 향후 사용할 경우 높이 2.5m이상으로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로프와 로립을 추가하고 현재 상부 발판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상부발판을 해치형으로 교체설치 요망
 - 그러나 사용하지 않고 해체할 경우 해체 전까지 올라갈 수 없도록 조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,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,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인현 데크 하부 작업대 크레인은 근로자의 안전대 걸이를 작업대 전도사고를 대비하여 붐에서 인출하여 걸 수 있도록 조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, 제44조(안전대의 부착설비 등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연결통로A 계단구간 경사면 통행 중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로프 설치 요망
- 연결통로A에 사용 중인 일자형 사다리 아웃리거를 분리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교육 및 관리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,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04(사다리(일자형)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연결통로A 구조물 공사는 협소한 공간에서 추락, 전도, 협착 등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탑 슬래브, 벽체 거푸집 공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동선 확보와 안전, 시공,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하여 작업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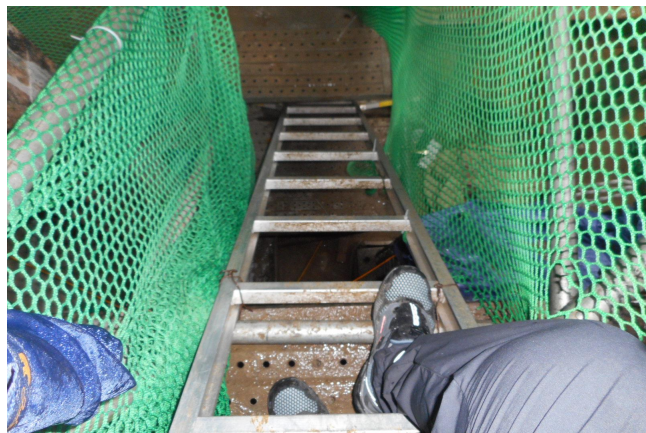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인현 데크 상부 바닥 석재포장 작업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치 요망
 - ① 일부 개구부 낙하물 방지망이 열려 있는 개소가 있으므로 전수조사 하여 보수
 - ② 석재포장 단부작업을 위해 수직방망을 열어 놓은 상태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관리 철저히 하고, 완료 후 수직방망 원위치할 수 있도록 조치
 - ③ 석재포장이 끝난 구간 중 기존 난간과 틈이 발생한 구간은 마감 전까지 낙하물 방지조치
 - 연결통로A 가설통로 상부에 빗물을 막기 위해 설치한 합판이 미고정 상태로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정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,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/위험 방지 업무 등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연결통로A 작업장이 협소하여 가설계단을 내릴 수 없는 각도에는 일자형 사다리를 사용 중이나 상승/하강 중 답단 사이로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다리 후면에 낙하물 방지망 설치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,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/위험 방지 업무 등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건축부)

- 연결통로A 흙막이가시설에 근접하여 위치한 건물 기둥이 흙막이가시설 해체 중 침하가 일어나 변형될 경우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체 전에 측량하고 완료 후 측량하여 이상 유무 확인 요망
 - 또한 계측, 해체, 되메우기 관리 철저히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신설 데크B 서측 가설사무실 내외부에 사용 중인 이동식전선은 다음 사항을 준수 요망
 - ① 전체 콘센트 접지극 연결 상태 확인
 - ② 이동식전선 통로바닥 사용 금지
 - ③ 우천에 플러그가 젖지 않도록 관리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(전기 기계/기구의 접지), 제315조(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), 제316조(꽃음접속기의 설치/사용 시 준수사항)



○ 건설기계 안전(건축부)

- 정차 중인 고소작업대 구름방지 조치하도록 교육 및 관리 요망
 - 연결통로A에 자재운반용으로 사용 중인 카고 크레인 아웃트리거가 발판보다 작은 받침판을 사용하거나 분리된 받침판을 사용하여 전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발판보다 넓고 분리되지 않은 균질한 재료의 받침판으로 교체 설치 후 작업 요망
 - 또한 해당 카고크레인 운전원은 시동키를 방치하고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이탈하여 타인에 의해 오작동 될 수 있으므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관리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(운전 위치 이탈 시의 조치)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29(건설기계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신설 데크B 서측 가설사무실과 연결통로A 공통으로 미사용 가스용기가 위험물 보관소로 옮겨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므로 관련 작업자 재발방지 교육 및 관리 요망
 - 또한 위험물 보관소에 LPG, 탄소가스 MSDS와 가스용기 관리 규칙 게시 요망
 - 연결통로A는 위험물 보관소를 가용할 수 있도록 자재 정리 요망
 - 신설 데크B 서측 가설사무실 위험물 보관소와 웬스에 붙어서 인화성 폐기물이 야적되어 통행자, 차량에 의해 투척된 담배꽂이가 발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반출하고 해당 장소에 폐기물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(위험물 보관소), 제234조(가스등의 용기)
-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24(위험물 보관소)

